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숙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29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10월 11일

발 의 자: 이숙자, 강석주, 경기문,  
곽향기,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민병주,  
박상혁, 박춘선, 박환희,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이경숙, 이민석,  
이병운, 이상욱, 이성배,  
이용균, 이종환,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최민규, 최유희, 최호정,  
허·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42명)

1. 제안이유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및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조례상 그 재정지원의 범위는 사립의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제한되어 있어 사립의 초등학교는 제외되어 있음.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의 내부 지침에 따라 실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수업료 자율화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임.

그러나 우리나라는 극도의 출산율 저하에 따라 학생수가 급감하여 대부분의 사립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수업료 자율화학교라 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재정상태가 어려운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조례 개정을 통해 재정상태가 어려운 사립의 모든 학교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교육환경에서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대상을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함(안 제3조제1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중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① (생략)</p> <p>1. <u>사립의</u>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p> <p>2. (생략)</p> <p>② (생략)</p>	<p>제3조(지원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1. 「<u>초·중등교육법</u>」 제2조 <u>중사립의</u>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p> <p>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문서 번호

2023091900000002

##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이숙자 의원

담당 : 오희선 과장  
이정수 팀장  
박지영 주무관

접수일 : 2023.09.19.

회신일 : 2023.09.25.

내용문의 : 02-2180-7952

###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재정분석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지원 대상)을 기존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 중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변경함에 따라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1호 및 제4호, 제5호에 대한 비용이 발생함
- ※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2호 및 제3호는 제3조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추계에서 제외함

제4조(지원대상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재정결함액 지원사업
2. 특수교육진흥<sup>1)</sup>을 위한 사업
3.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sup>2)</sup>
4.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 3. 미첨부(2호)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 같은 조례안 제4조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 지원대상이 사립의 초등학교까지 확대 될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관부서인 교육청 학교지원과 및 교육시설안전과에 문의한 결과, 사립 초등학교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6조제2항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한 ‘교부금산정 기준학교’가 아니므로 사립 초등학교에 대한 조사현황<sup>3)</sup>이 없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1) 특수교육진흥사업은 공·사립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관계없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추진함  
2) 교육청 주관부서인 진로직업교육과 문의결과, 특성화고등학교 중 입학금 및 수업료 자율화 고등학교(자사고)는 없음  
3) 재정결함액 지원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에 의거, 전년도에 대상학교의 재정결함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며 교육환경개선사업 또한 전년도에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한 학교에 대한 현황 조사 후 예산을 편성함

※ 참고자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산정기준>을 붙임

- 또한 개정 취지에 밝힌 재정지원 사각지대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역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령」에 의거한 ‘교부금산정기준학교’가 아니므로 대상학교에 대한 조사 현황이 없어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같은 조례안 제4조 제5호의 경우 역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범위가 정확하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박지영

☎ 02-2180-7952  
e-mail : 7magic7@seoul.go.kr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2. 11. 1.>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측정항목		측정단위	산정기준
1. 교직원 인건비		교원 수	전년도 공립 유치원, 공립 초등학교, 공립·사립 중학교, 공립·사립 고등학교, 공립·사립 특수학교 및 공립·사립 대안학교(이하 "교부금산정기준학교"라 한다) 소속의 교원 수
		교원 증원 수	교육부장관이 승인한 교부연도의 공립학교의 교원 증원 수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부연도 총액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 수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
		명예퇴직 교원 수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원 수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전문직원 수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교육부장관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및 사무직원 수
2. 학교 운영비	가. 학교경비	학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 수
	나. 학급경비	학급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급 수 2)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의 학급 수
	다. 학생경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라. 삭제 <2020. 10. 20.>		
	마. 교과교실 운영비	학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여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
		증설 교과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과교실 수
		교과교실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교실 수
바. 삭제 <2020. 10. 20.>			



	사. 추가 운영비	학교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중 추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학교 수
	아. 삭제 <2019. 2. 26.>		
	자. 삭제 <2019. 2. 26.>		
	차. 삭제 <2019. 2. 26.>		
3. 교육 행정비	가. 기관운영비	학교 수, 학생 수 및 기준 교직원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교 수 및 학생 수 2)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기준 교직원 수
	나. 지방선거경비	지방선거경비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선거 관리 경비 및 해당 경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4. 교육복지 지원비	가. 지역 간 균형 교육비	학교 수, 소재 행정구역 면적, 도서·벽지 소재 학교의 학생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수 2)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면적 3)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한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나. 계층 간 균형 교육비	학생 수, 수급자 수,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수, 차상위계층 학생 수,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가정 학생 수	1)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수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 학생 수 4)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차상위계층 학생 수 5)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 수 6)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가정 학생 수
		정보화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자율형 사립고등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3항에

		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의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중 미충원 학생 수	다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와 사립 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선발하여야 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수 중 미충원 학생 수
5. 교육기관 등 시설비	가.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교육환경개선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지, 보수 또는 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내 시설의 건축연면적
	나. 공립학교 신설·이전(移轉)·증설비	토지면적	중앙의뢰심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조 및 제41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의 의뢰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하는 투자심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증설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다. 공립 통합·운영학교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의 건축연면적
	라. 공립 유치원 신설·증설비	토지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교사(校舍)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單設) 유치원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교사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 유치원의 표준 건축연면적
		공유재산 전환형 건축연면적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인 토지·건물을 교지·교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신설하려는 단설 유치원의 표준 건축연면적
		증설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전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치원의 교실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실 수	
매입 대상 사립 유치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사립 유치원을 매입·전환하는 방식으로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기 위해 매입하려는 사립	

			유치원의 수
	마.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이전·개축·증설·대수선비	토지면적	학교통폐합에 따른 신설 및 이전 대상 학교 중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학교의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1) 학교 통폐합에 따른 신설, 이전 및 개축 대상 학교 중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학교의 건축연면적 2)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증설·대수선이 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연면적
	바. 삭제 <2019. 2. 26.>		
	사. 사립학교 이전·증설비	건축연면적	중앙의뢰심사를 거친 이전 대상 사립학교의 표준 건축연면적 및 이전 건축비를 정산한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증설 교실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실 증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증설 교실 수
	아. 삭제 <2022. 11. 1.>		
	자. 청사 신설·이전비	토지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표준 토지면적
		건축연면적	투자심사를 거친 신설 및 이전 대상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청사의 표준 건축연면적
6. 유아 교육비	가.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유아 수	1)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최대 3년의 범위에서 공통 교육·보육 과정을 제공받는 만 3세 이상의 유아 수 2) 보육료 정산 결과 남거나 부족한 금액
	나. 유치원 교원 인건비 보조	교원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교원 수
	다. 유치원 교육역량 지원비	유치원 수 및 원아 수	1) 공립·사립 유치원 수 2) 공립·사립 유치원의 원아 수
	라. 삭제 <2015.10.20.>		
7. 방과 후 학교 사업비	가. 방과후학교 사업지원	학급 수	1) 읍·면 지역 및 도서(島嶼)·벽지(僻地)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2) 대도시 및 시 지역에 있는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급 수
	나. 자유수강권 지원	수급자 수	수급자 수
	다. 초등 돌봄 지원	학급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여 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에서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급 수
		교실 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초등 돌봄교실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실 수
8. 고교무 상 교육 지원	가. 입학금·수업 료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나. 학교운영지원 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다. 교과용 도서 구입비	학생 수	교부금산정기준학교의 학생 수
9. 재정결 합 보전	가. 지방채 상환	원리금상환액	교육부장관이 원리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원리금상환액 및 이자액
	나. 민자사업 지급금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교육부장관이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업의 임대료
	다. 재정안정화 지원	지원액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

비고

**1. 다음 각 목의 사립학교는 교부금산정기준학교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 삭제 <2022. 11. 1.>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  
교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등공민학교

라.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중 과학·외국어·국제·예  
술·체육 계열의 특수목적고등학교

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각종학교 및 외국인학교를 말한다)

차.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1) 초등학교의 과정만 운영하는 대안학교

2)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대안학교

카. 그 밖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

2. 학교 수, 학급 수 및 학생 수는 교부금 교부연도의 전년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교부연도에 학교  
수, 학급 수 또는 학생 수의 증감이 계획되거나 예정된 경우에는 증감 예상 수를 더하거나 뺄  
수 있다.

3. 측정항목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최근 5년간 통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는 2010년 이후 통  
폐합으로 줄어든 학교(본교만 해당한다)부터 산정한다.

4. 측정항목 제2호가목의 학교경비를 산정할 때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에 설치된 학교의 경우에는 1.5를 곱하여 산정한다.

4의2. 측정항목 제2호나목의 학급경비를 산정할 때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교급별 학급당 기준 인원을 초과하는 학급의 경우에는 1.2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측정항목 제2호마목의 산정기준에서 "교과교실제도를 운영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모든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학생들이 각 교과 시간에 해당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

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일부 교과에 대한 전용교실을 각각 갖추고, 해당 교과시간에는 그 전용교실을 활용하여 교과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학교로서 교부연도 이전까지 측정항목 제2호마목에 따른 산정기준에 포함된 횟수가 총 3회 이하인 학교

6. 삭제 <2020. 10. 20.>

7. 측정항목 제2호사목에서 "추가로 운영비 지원이 필요한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기숙형 고등학교: 교육 낙후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 기숙사 운영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고등학교

나. 통폐합 기숙학교: 학교 통폐합에 따라 투자심사를 거쳐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다. 삭제 <2021. 11. 16.>

라.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이 경우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학교 수는 2017년 이후 지정이 취소된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국제계열 고등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수를 누적한 것을 말하되, 해당 학교가 지정 취소된 연도에서 3년이 경과한 연도분의 교부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는 해당 학교를 제외하고 일반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의 학교 수를 산정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마. 특성화고등학교 전환 고등학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이 경우 해당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심사를 거쳐 전환·증설·개편 계획을 인정받은 고등학교로 한정한다.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하려는 고등학교
- 2) 직업교육 학급을 증설하려는 고등학교
- 3) 직업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직업교육 학과를 개편하려는 고등학교

바. 학점제 운영 직업계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각 호의 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사. 학점제 운영 일반계 고등학교: 다음의 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의 일반고등학교(같은 영 제43조제2항제1호의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같은 조 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 아.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의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이 경우 학점제 운영에 드는 경비는 제외하고 지원한다.
- 자. 학점제 운영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특수학교로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학점제를 운영하는 특수학교
8. 측정항목 제3호가목의 산정기준에서 "기준 교직원 수"란 해당 시·도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 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직원 1명당 평균 학생 수로 나누어 산출된 교직원 수의 합을 말하며,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대도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동
  - 나. 시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시(인구 50만 미만의 시를 말한다)의 동
  - 다. 읍·면 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읍·면
  - 라. 도서·벽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중 학생 수 300명 미만의 학교가 있는 도서·벽지
9. 측정항목 제5호나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를 말한다.
- 9의2. 측정항목 제5호다목에서 "통합·운영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를 말하고, "이전 대상 학교"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하는 학교를 말한다.
10. 측정항목 제5호나목·라목 및 사목의 산정기준에서 "표준 토지면적" 및 "표준 건축연면적"이란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정한 토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말한다.
11. 측정항목 제5호마목에서 학교 통폐합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가. 2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가 통폐합할 것
  - 나. 통폐합한 학교의 학생을 수용하기 위하여 기존 학교의 개축·이전·증설·대수선이나 학교의 신설이 필요할 것
12. 측정항목 제5호다목 및 마목의 측정단위 중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목의 건축연면적을 포함한다.
- 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건축연면적
  - 나. 기숙사 및 교직원사택, 평생교육시설, 잔디운동장, 수영장 등 학교 다목적 시설의 건축연면적
13. 측정항목 제5호마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학교"란 2개 이상의 학교(본교만 해당한다)



를 통폐합하여 기존 학교 부지 외의 장소로 옮기는 학교를 말한다.

14. 삭제 <2019. 2. 26.>

15. 측정항목 제5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은 서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6. 측정항목 제5호사목의 산정기준에서 "이전 대상 사립학교"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학생 수가 200명을 초과하는 사립 중학교 또는 사립 고등학교일 것

나. 이전되는 학교의 학생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치될 수 있을 것

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증가할 예정인 지역으로 학교 신설을 대체하여 이전할 것

17. 측정항목 제5호사목 중 사립학교 이전비는 기존 학교의 교지, 교사(강당을 포함한다) 및 체육장 매각 계약 금액에서 이전하는 학교의 교지 매입 계약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금액을 제외한 표준 건축비로 한다.

18. 측정항목 제5호자목의 산정기준에서 "표준 토지면적" 및 "표준 건축연면적"이란 교육부장관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규모에 따라 정한 토지면적 및 건축연면적을 말한다.

19.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각 회계연도의 기준재정수요액은 측정항목 제6호가목1)을 제외하고 산정한다.